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 도입과 이로 인한 감사보수의 인상이 감사인의 독립성을 제고하나?*

이광숙** · 기은선***

〈요 약〉

본 연구는 2019년 말 자산총액이 1,826억원 이상인 유가증권 및 코스닥시장 상장기업의 2019년과 2020년 재무자료 및 감사보수 자료를 이용하여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 도입으로 인한 감사보수 증가가 감사품질에 미친 효과를 살펴본다. 감사인을 지정하면 신규고객 유치를 위한 경쟁이 없으므로 감사보수가 증가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선행연구는 자유수임제 하에서 초도감사 보수할인이 감사품질의 하락을 가져오는지를 주로 살펴보았으며, 감사인 지정으로 인한 감사보수의 인상이 궁극적으로 감사품질 제고로 이어지는지를 직접적으로 살펴본 연구는 이제까지 없다. 주기적 감사인 지정대상기업이 대응기업에 비하여 감사보수가 크게 인상되었으나, 이러한 감사보수의 증가가 신규고객에 대한 감사인의 단순이해 증진에 들어간 감사비용의 보상에 그치고 본래의 도입 목적인 감사품질의 제고에 기여하지 못한다면 주기적 지정제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효익보다 큰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본 연구는 감사보수 인상이 감사품질에 미치는 영향이 주기적 지정기업과 대응기업 사이에 차이가 있는지를 검증한다. 주요 실증결과는 다음과 같다. 자산총액 1,826억원 이상 대규모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실증분석을 수행한 결과, 주기적 지정제는 감사품질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주기적 지정제 도입 후 주기적 지정제 적용기업뿐 아니라 그 외 기업도 유의하게 감사보수가 인상되었으나, 감사보수인상률은 감사품질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실증결과는 대형 상장기업의 경우 주기적 지정제의 도입이 감사투입시간에 비하여 부족한 감사보수를 현실화하는 효과는 있었지만, 이것이 감사품질의 증가로 이어지지 못했음을 시사한다.

〈주제어〉 감사품질, 감사보수,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

* 이 논문은 2021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인문사회분야 신진연구자지원사업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21S1A5A8071149).

** 한국공학대학교 경영학부 부교수, kslbest@tukorea.ac.kr, 주저자

*** 강원대학교 경영회계학부 부교수, eski@kangwon.ac.kr, 교신저자

논문접수일 2022년 11월 29일 1차수정일 2022년 12월 29일 게재확정일 2022년 12월 30일

I. 서 론

감사인 지정방식에는 주기적 지정과 직권지정, 크게 두 가지 방식이 있다. 직권지정은 회계부정 가능성이 높은 기업에 대하여 증권선물위원회가 감사인을 지정하는 제도로 1990년 처음 도입된 이후 적용대상기업에 다소 변화가 있었지만, 현재까지 시행되고 있다.¹⁾ 주기적 지정은 기업이 감사인을 자율적으로 6년간 선임하면 그 다음 3년은 증권선물위원회가 감사인을 지정하는 제도로 자산규모 1,826억원(2019년 말 기준) 이상의 220개 상장사 감사에 2020년 처음 적용되었다. 주기적 지정제는 대우조선해양의 분식회계로 촉발된 회계개혁의 핵심제도로 감사인의 독립성을 확보하고, 감사품질을 개선하는 것을 정책목표로 한다.

주기적 지정제는 기업이 자율적으로 선임할 수 있는 감사인의 임기가 6년으로 제한되어 있다는 점에서 2003년 도입되었다가 2011년 폐지된 감사인 강제교체제도와 유사하다. 그러나 기업이 선임 감사인을 선택할 수 있었던 감사인 강제교체제도와 달리 주기적 지정제는 기업의 감사인 자유선임권이 배제되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규제당국이 감사인 강제교체제도 폐지 후 9년 만에 주기적 지정제를 재도입한 데에는 감사인 간 수임경쟁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감사인의 임기만 6년으로 제한하는 방식은 감사인의 독립성 제고에 실질적 도움이 되지 못한다고 보았기 때문이다(최아름 외 2014). 실제로 감사인 강제교체시행기간 감사품질의 변화를 살펴본 국내 선행연구 결과를 살펴보면 감사인 강제교체는 감사품질에 효과가 없거나 오히려 감사품질을 낮출 가능성이 높다(노준화 2009). 감사인 자유선임을 허용하면 신규고객 유치를 위한 감사인 간 경쟁으로 인하여 감사보수 할인이 발생하고, 감사보수 할인이 감사시간의 축소를 귀결될 경우 감사인 강제교체가 감사인의 독립성을 높이는데 실질적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감사인 강제교체와 반대로 직권지정의 효과를 살펴본 선행연구들은 감사인 직권지정이 감사품질을 높였다는 실증결과를 보고하고 있다(강선민·황인태 2007; 권수영 외 2004; 송인만·박연희 2005; 박한순 1996; 안영균·이재경 2004). 이 때문에 규제당국은 감사품질 제고효과가 입증된 직권지정의 형태로 감사인의 주기적 교체를 강제하는 ‘주기적 지정제’ 도입을 결정한 것으로 판단된다.

주기적 지정제는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시행되는 제도로 감사인 강제교체의 장점(장기계약으로 인한 유착관계 단절)은 그대로 살리면서 단점(초도감사 보수 할인으로 인한 감사품질 저하)은 보완한 획기적 방안으로 전 세계의 관심을 끌고 있다. 그러나 감사인 직권지정이 감사품질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실증결과는 회계부정 가능성이 높은 기업에 감사인을 직권 지정했을

1) 직권지정사유로는 회사 요청, 감사인 미선임, 감사인 부당교체, 감사인 선임절차 위반, 감리결과 조치, 부채비율 과다, 3년 연속 영업손실 또는 음(-)의 영업현금흐름 또는 이자보상배율 1 미만, 관리종목, 투자주의 환기종목, 상장예정법인, 다른 법률에 따른 지정 요청, 횡령/배임 발생, 주채권은행 등의 지정 요청, 기관투자자인 주주의 지정요청, 감사전재무제표 제출의무 등 외감법령을 위반한 경우, 재무제표 대리작성/회계자문 요구, 감사시간이 표준감사시간에 현저히 미달한 회사, 3년간 최대주주 2회 이상 또는 대표이사 3회 이상 변경, 지정기초자료 제출의무 위반 등이 있다.

때 나타난 효과로 회계부정 가능성이 낮은 기업에 감사인을 지정했을 때에도 동일하게 감사품질 제고효과가 유지될 것인지는 실증적으로 검증이 필요한 문제이다. 그 동안 규제당국이 감사인을 직권 지정했던 기업들은 회계투명성이 낮은 한계기업들이었기 때문에 감사인 지정이 피감기업과 전임감사인 간 유착관계를 단절하여 감사인의 독립성을 높이는 장점이 상대적으로 크게 부각되었지만, 주기적 지정제 적용대상기업들은 회계부정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건전한 기업들이므로 감사인 지정이 사회적으로 불필요한 비용증가만 초래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러한 연구동기 하에 본 연구는 주기적 지정제 도입이 감사인의 독립성에 미친 효과를 실증적으로 살펴본다. 감사인의 독립성은 선행연구에 따라 실질상 독립성과 외관상 독립적으로 구분하였다(최아름 외 2014).

한편 주기적 지정제는 회계개혁의 핵심수단이나, 기업들의 불만이 가장 많은 제도 중 하나이다.²⁾ 기업들이 주기적 지정제에 불만을 가지는 가장 큰 이유는 피감기업의 상대적 교섭력 약화로 인한 감사보수의 급증 때문이다.³⁾ 직권지정은 회계부정 가능성이 높은 기업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피감기업의 고유위험에 대하여 감사인에게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그러나 주기적 지정은 초도감사로 인한 시간증가 이외에 감사인이 추가적으로 기업에 감사비용의 보상을 요구할 이론적 근거가 부족하다.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자유수임이 초도감사 보수할인으로 이어지는 것과 반대로 직권지정은 감사보수의 증가를 가져온다(노준화 외 2003). 그러나 감사인 지정으로 인한 감사보수의 인상이 궁극적으로 감사품질의 증가로 이어지는지를 직접적으로 살펴본 연구는 이제까지 없다. 주기적 감사인 지정대상기업이 대응기업에 비하여 감사보수가 크게 인상되었으나, 이러한 감사보수의 증가가 신규고객에 대한 감사인의 단순이해 증진에 들어간 감사비용의 보상에 그치고, 본래의 도입 목적인 감사품질 제고에 기여하지 못한다면 주기적 지정제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효익보다 큰 것으로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연구배경 하에 본 연구는 주기적 지정제로 인한 감사보수의 인상이 감사품질의 증가와 직접적으로 관련성이 있는지를 실증적으로 검증한다.

II. 제도적 배경 및 선행연구

1. 제도적 배경⁴⁾

감사인 지정은 증권선물위원회가 기업의 감사인을 지정하는 제도로 주기적 지정과 직권지정

- 2) 주기적 지정제는 2020년 한국경영자총협회의 대정부 건의서에서 기업경영장벽의 1순위로 제기되는 등 동 제도에 대한 기업들의 불만이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 3) 자본시장연구원의 분석결과에 따르면 상장기업 감사보수는 외부감사법 전면 개정 이전인 2017년 대비 최근 2년 간 57.2%(2018년 11.7%, 2019년 30.3%)가 상승하였다.
- 4) 금융감독원, 『주기적 지정제 등 외부감사제도 설명회』, 2019.8.

두 가지 종류가 있다. 직권지정은 감리결과 회계부정이 발견되었거나 횡령이나 배임이 발생한 기업, 관리종목이나 투자주의 환기종목, 재무건전성에 문제가 있거나 최대주주나 대표이사가 자주 변경되는 기업 등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공정한 감사가 필요한 경우 증권선물위원회가 감사인을 지정하는 제도이다. 주기적 지정제는 2017년 10월 외부감사법 전면 개정 시, 처음 도입되었다. 동 제도에 따르면 증권선물위원회는 연속하는 6개 사업연도의 감사인을 자유선임한 주권상장법인 및 소유와 경영이 미분리된 대형 비상장회사에 대하여 다음 3개 연도 감사인을 지정할 수 있다. 주권상장법인의 주기적 지정은 2019년 11월 1일 이후 개시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되며, 소유와 경영이 미분리된 대형 비상장회사에 대한 주기적 지정은 2022년부터 적용된다. 한편 감사인을 지정받은 회사는 지정 사업연도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사업연도의 감사인을 자유선임할 때 전기 지정감사인을 선임할 수 없다.

2. 선행연구 검토

가. 감사인 강제교체가 감사품질에 미친 효과

2000년대 초반 엔론을 비롯한 미국의 대규모 회계부정 사태를 계기로 감사인 강제교체제도 도입에 관한 논의가 전 세계적으로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감사인 강제교체제도를 도입한 국가가 적기 때문에 이 분야의 연구들은 주로 계속감사기간과 감사품질 간 관계를 통해 간접적으로 감사인 강제교체 도입의 효과를 예견하였다. 선행연구는 대체로 계속감사기간이 길어지면 감사품질이 높아진다고 보고하고 있다. 계속감사기간이 늘어나면 재량적 발생액을 이용한 이익조정이 감소할 뿐 아니라(Jonhson et al. 2002 ; Myers et al. 2003 ; 임영덕 2006 ; 권수영 외 2008 ; 최관 · 박종일 2012) 목표이익 달성을 위한 이익조정 또한 줄어든다(Davis et al. 2009). 이러한 실증결과는 감사인 강제교체가 감사품질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감사인 강제교체의 효과를 직접적으로 살펴본 연구들의 실증결과는 엇갈리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2003년 감사인 강제교체제도를 도입하여 2011년까지 시행한 이력이 있다. 감사인 강제교체제도의 시행이 감사품질에 미친 효과를 살펴본 국내 선행연구 결과에 따르면 감사인 강제교체기업이 자율교체기업에 비하여 재량적 발생액이 적다고 보고한 연구가 있는 반면(김선미 · 유승원 2010), 감사인 강제교체가 피감기업의 재량적 발생액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고 보고한 연구도 있다(노준화 2009). 일부 연구들은 감사인 강제교체가 교체 이후 연도의 재량적 발생액에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했지만, 교체 직전 연도의 재량적 발생액을 낮추는 효과가 있었기 때문에 감사인 강제교체를 실패한 정책으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한다(신근식 외 2014 ; 정도진 외 2018).

나. 감사인 직권지정이 감사품질에 미친 효과

우리나라에서 감사인 직권지정은 1990년 처음 도입되었다. 감사인 직권지정은 회계부정의 가능성이 높은 기업을 대상으로 하며, 이 분야의 선행연구들은 대체로 감사인 직권지정이 감사품질을 제고하였다는 실증결과를 보고하고 있다. Kim and Yi(2009)는 감사인 직권지정기업의 재량적 발생액이 자율교체기업보다 낮은 것을 발견하였다. 감사인 직권지정 전후 피감기업의 재량적 발생액의 변화를 살펴본 선행연구 결과에 따르면 직권지정 후가 직권지정 전에 비하여 재량적 발생액이 적으며, 감사인 지정이 해제되면 다시 재량적 발생액이 크게 증가한다(강선민·황인태 2007; 권수영 외 2004; 송인만·박연희 2005; 박한순 1996; 안영균·이재경 2004).

본 연구와 유사한 연구로 손혁 외(2022)는 주기적 지정제가 감사품질을 제고하는지를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주기적 지정제는 재량적 발생액에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한 반면 적발이 어려운 실물활동 이익조정과는 유의한 양(+)의 관계를 나타냈다. 김현정과 유승원(2022)는 주기적 감사인 지정 가능성이 재무제표의 보수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실증결과 주기적 감사인 지정 가능성이 존재할 때 기존 감사인의 보수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 감사인 교체로 인한 감사보수의 변동과 감사품질의 관계

감사보수의 인상이 감사품질에 미치는 효과를 직접적으로 살펴본 선행연구는 없다. 이 분야의 선행연구는 비정상 감사보수와 감사품질, 감사인 교체로 인한 초도감사보수 할인이 감사품질에 미치는 영향을 주로 다루고 있다. 비정상 감사보수와 감사품질의 관계를 살펴본 선행연구는 동종 산업 내 기업보다 감사보수를 비정상적으로 많이 받는 기업이 감사품질이 높은지 또는 낮은지를 살펴보았다. 감사보수는 감사노력에 대한 원가와 소송위험 그리고 정상이윤을 반영하는 정상보수와 감사인과 고객 간 유착관계에 귀속되는 비정상보수로 구성된다. 비정상적으로 높은 감사보수는 감사인이 중대한 재무제표의 왜곡에 대해 침묵할 유인을 제공함으로써 감사품질의 하락을 가져올 수 있다. 비정상 감사보수와 감사품질의 관계에 관한 국내외 선행연구 결과는 혼재되어 있다. 국내연구의 경우 비정상적으로 높은 감사보수는 감사품질과 유의한 관계가 없고 비정상적으로 낮은 감사보수가 감사품을 낮추는 것으로 보고하였지만(박종일·전규안 2018), 해외연구는 이와 반대로 비정상적으로 낮은 감사보수는 감사품질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비정상적으로 높은 감사보수가 감사품을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다(Choi et al. 2010).

한편 초도감사보수 할인과 감사품질의 관계를 살펴본 선행연구들은 대체로 초도감사 보수할인이 감사품질의 하락으로 이어짐을 보고하고 있다. 신용인 외(2007)에 따르면 초도감사 보수할인기업의 감사품질이 초도감사 보수비할인기업에 비하여 낮았다. 최종학 외(2016)는 초도감사 보수할인이 감사품을 낮추는 효과가 자율교체기업과 강제교체기업에서 다르게 나타나는지를 검증하였다. 분석결과 자율교체기업은 초도감사 보수할인 규모가 클수록 감사품질이 유의하게 하락하나, 강제교체기업은 초도감사 보수할인과 감사품질 간 유의한 관련성이 없었다.

라. 선행연구와의 차별점

손혁 외(2022)는 주기적 지정제가 감사품질에 제고하는지를 살펴보았다. 본 연구는 주기적 지정제 시행 그 자체가 감사품질에 미치는 영향과 더불어 주기적 지정제로 인한 감사보수의 인상이 감사품질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는 점에서 손혁 외(2022)의 연구를 확장하고 있다. 주기적 지정제로 인한 감사보수의 인상은 사회적 비용의 증가를 가져온다. 따라서 주기적 지정제가 감사품질에 미치는 영향은 주기적 지정제로 초래된 사회적 비용의 증가와 연계하여 분석하는 것이 주기적 지정제로 인한 사회적 비용과 효익을 종합적으로 고찰할 수 있는 방안이라 생각된다. 김현정과 유승원(2022)은 주기적 감사인 지정 가능성이 재무제표의 보수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김현정과 유승원(2022)의 연구의 핵심은 감사인 변경에 대비해서 전임 감사인이 감사품을 높이는지 살펴보는 것이다. 신규 감사인과 의견 불일치를 줄이기 위하여 전임 감사인이 감사품을 높이는 것 역시 주기적 지정제 도입의 긍정적 효과 중 하나로 볼 수 있다. 하지만 감사보수의 증가는 주기적 지정제 시행 전이 아니라 후에 나타나기 때문에 주기적 지정제 시행을 전후하여 발생한 감사보수의 증가가 감사품질의 제고를 가져왔는지는 신규 감사인의 반응을 토대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김현정과 유승원(2022)의 연구가 주기적 지정제 시행 전 전임 감사인의 감사품질의 변화에 초점을 맞춘 반면 본 연구는 주기적 지정제 시행 후 신규 감사인의 감사보수 청구와 감사품질의 변화에 집중하였다는 점에서 차별점이 있다.

III. 연구가설 설정

1.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 도입이 감사품질에 미치는 효과

본 연구의 첫 번째 가설은 주기적 지정제가 감사품질에 미친 효과로, 동 제도 도입 이후 감사인이 독립적으로 감사를 수행함으로써 감사의 결과물인 재무제표의 품질이 제고되었는지 검증한다. DeAngelo(1981)에 따르면 감사품질은 감사인의 전문성과 독립성의 결합함수이다. 동일 감사인이 장기간 한 기업을 감사하면 감사인과 피감기업 간에 유착관계가 생기거나 감사인이 전문가적 의구심을 가지고 감사에 임하지 않으므로 감사인의 독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주기적 감사인 교체는 감사인과 피감기업 간 유착관계를 단절하고, 감사인이 신선한 시각으로 감사할 수 있게 함으로써 감사인의 독립성을 높일 수 있다. 그러나 피감기업에 대한 지식은 그 기업에 대한 다년간의 감사경험을 통해 누적되는 바, 빈번한 감사인 교체는 감사인의 전문성 하락을 초래할 수 있다. 감사인의 빈번한 교체가 감사인의 전문성을 낮추어 감사품질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주장은 감사인 강제교체제도의 도입을 반대하는 측의 주된 논거로 사용되었다. 그 동안의 실증연구 결과를 살펴보면 기업이 감사인을 자유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가

진 상황 하에서는 후자의 논리가 우세한 것으로 판단된다(Johnson et al. 2002 ; Myers et al. 2003 ; 임영덕 2006 ; 권수영 외 2008, 최관 · 박종일 2012). 즉, 감사인을 주기적으로 교체하게 강제하되 신입 감사인을 기업이 선택할 수 있게 허용할 경우, 전문성의 감소가 독립성을 제고하는 효과보다 크게 나타나서 감사결과물인 재무제표의 품질이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그러나 주기적 지정제는 기업이 감사인을 자유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배제했기 때문에 선행연구와 다른 결과가 도출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주기적 지정제는 기업의 감사인 자유선택권을 배제함으로써 신규고객 유치 경쟁으로 인한 감사보수 할인이 발생할 가능성이 낮다. 감사보수의 할인 없이 감사인이 추가투입시간에 대해 적정한 보상을 받을 수 있다면 피감기업에 대한 이해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할 것이므로 신규 고객에 대한 이해부족에서 비롯되는 감사인의 전문성 하락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다른 편으로 2020년도에 주기적 지정제를 적용받는 기업은 대형 상장기업이기 때문에⁵⁾ 감사인이 비지 시즌(busy season)에 가용시간을 최대한 투입하더라도 피감기업의 복잡한 사업구조를 완전히 이해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다. 두 가지 상반된 주장이 모두 가능하기 때문에 본 연구는 주기적 지정제가 감사품질에 미치는 효과를 귀무가설의 형태로 설정한다.

본 연구에서 감사품질은 선행연구에 따라 피감기업의 재량적 발생액의 절대값의 감소로 측정한다(Johnson et al. 2002 ; Myers et al. 2003 ; Francis et al. 2013 ; McGuire et al. 2012). 감사인의 독립성이 제고되면 신선한 시각을 가지고 감사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감사인과 피감기업 간 유착 단절로 재량적 발생액을 이용한 기업의 이익조정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가설 1 : 주기적 감사인 지정은 재량적 발생액의 절대값과 유의한 관련이 없다.

2.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 도입으로 인한 감사보수의 증가와 감사품질

본 연구의 두 번째 가설은 주기적 지정제 도입으로 늘어난 감사비용이 감사품질의 증가를 가져왔는지 살펴보는 것이다. 자유수임제 하에서는 신규고객 유치를 위한 감사인 간 경쟁으로 인하여 초도감사 보수할인이 나타나는 것이 일반적인 반면 지정제 하에서는 감사인 간 경쟁이 없기 때문에 감사보수가 증가하는 것이 일반적이다(노준화 2003).

선행연구에 따르면 감사인 강제교체기업의 경우에도 초도감사 보수할인이 광범위하게 발생하나(박재환 외 2008), 강제교체기업의 초도감사 보수할인은 자율교체기업과 달리 감사품질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최종학 외 2016). 최종학 외(2016)는 이러한 실증결과를 감사인 강제교체기업은 감사인을 변경해야 할 특별한 이유가 없음에도 규정에 따라 의무적으로 교체한 것이기 때문에 자율교체기업과 달리 초도감사 보수할인이 감사인의 독립성을 저해할 가능성이

5) 주기적 지정제 분산시행에 따라 자산규모 1,826억원 이상인 상장자 220개가 지정되었으며 지정된 회사의 평균 자산규모(개별재무제표 기준)는 4조 7천억원임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해석하였다. 감사인 강제교체가 감사품질을 높이지는 못했다고 하더라도 기업이 부담하는 감사비용을 줄였다면 동 제도의 사회적 효익이 일부 입증된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주기적 지정제는 감사인의 상대적 교섭력 상승으로 감사보수의 증가를 가져왔다는 것이 중론이기 때문에 주기적 지정제 도입 이후 증가한 감사보수만큼 기업의 회계투명성이 높아졌는지를 실증적으로 검증하는 것은 동 제도의 사회적 효익과 비용 중 어느 것이 더 큰지를 확인함으로써 앞으로의 정책방향 수립에 중요한 의미가 있다.

감사인 교체가 발생하면 신규 고객을 이해하기 위하여 추가 시간투입이 필요하다. 자유선임제 하에서는 감사인 간 경쟁으로 인하여 추가시간 투입에 대해 적절한 보상을 받기 어렵지만, 주기적 지정제는 신규고객 유치 경쟁이 없으므로 고객이해시간 증가만큼 기업의 감사비용이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 기업이 추가 부담한 감사비용이 사회적으로 의미를 가지려면 증가한 감사비용에 비례하여 회계투명성 개선효과가 존재해야 한다. 주기적 지정제 도입으로 인한 감사보수의 인상이 단순히 신규고객에 대한 피상적 이해에 들어간 감사비용의 보상에 그친다면 주기적 지정제는 회계투명성 제고에 실질적 효과가 없으면서 감사비용만 늘린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본 연구는 감사보수 인상이 감사품질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러한 영향관계가 주기적 지정기업과 대응기업 사이에 차이가 존재하는지를 살펴보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가설을 설정한다.

가설 2 : 감사보수 인상이 감사품질에 미치는 영향은 주기적 감사인 지정과 유의한 관련이 없다.

IV. 연구설계

1. 연구모형

가. 가설 1 검증모형

식 (1)은 가설 1에 대한 검증모형으로 주기적 감사인 지정이 감사인의 실질상 독립성, 즉 재무제표의 품질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한다.

$$|DA_{i,t}| = \beta_0 + \beta_1 TREAT_{i,t} + \beta_2 POST_{i,t} + \beta_3 TREAT_{i,t} \times POST_{i,t} + Controls + \epsilon_{i,t} \quad \text{식 (1)}$$

변수의 정의

종속변수

DA = Kothari et al.에 따른 성과대응 재량적 발생액 ;

관심변수

TREAT = 주기적 지정제 대상기업이면 1, 아니면 0 ;

POST =주기적 지정제 도입 이후 연도이면 1, 이전 연도이면 0 ;
통제변수
BIG =감사인인 BIG4 회계법인이면 1, 아니면 0 ;
SIZE =기업규모(총자산(천원)의 자연로그 값) ;
DEBT =부채비율(=총부채/총자산) ;
ROA =총자산이익률(=당기순이익/총자산) ;
CFO =영업현금흐름/총자산 ;
SGR =매출액성장률(=(당기 매출액-전기 매출액)/전기 매출액) ;
LSH =최대주주지분율(특수관계자 지분율 포함) ;
FSH =외국인투자자지분율 ;
MKT =코스닥상장기업이면 1, 유가증권상장기업이면 0 ;
IND =업종더미(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중분류기준).

식 (1)에서 종속변수인 $|DA|$ 는 재량적 발생액의 절대값이다. POST는 주기적 지정제 도입 이후 연도이면 1, 주기적 지정제 도입 이전 연도이면 0의 값을 가지는 더미변수이다. TREAT는 회사가 주기적 지정대상기업이면 1, 통제기업이면 0의 값을 가지는 더미변수이다. β_3 의 회귀계수 값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의 값을 가지면 주기적 지정제 도입이 감사인의 독립성을 제고하여 재량적 발생액을 이용한 이익조정이 감소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Gaver and Utker(2019)에 따라 재량적 발생액의 크기에 영향을 미치는 다음의 변수들, 즉 시가총액의 자연로그 값, 부채비율, 전기 총자산이익률, 당기 총자산이익률, 손실보고 더미, 총자산 대비 영업활동현금흐름, 장부가치대시장가치비율, (총자산으로 나눈) 전기 총발생액의 절대값, 매출액성장률, 최근 5년간 경상손익의 표준편차, 계속감사기간, 연도 및 업종더미를 통제변수로 포함한다.

나. 가설 2 검증모형

식 (2)는 가설 2에 대한 검증모형으로 감사보수 인상률이 감사품질에 미치는 영향이 주기적 지정기업과 대응기업 사이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본다.

$$\begin{aligned} |DA|_{i,t} = & \delta_0 + \delta_1 TREAT_{i,t} + \delta_2 POST_{i,t} + \delta_3 TREAT_{i,t} \times POST_{i,t} \\ & + \delta_4 TREAT_{i,t} \times SURCHG_{i,t} + \delta_5 POST_{i,t} \times SURCHG_{i,t} \\ & + \delta_6 TREAT_{i,t} \times SURCHG_{i,t} \times POST_{i,t} + Controls \end{aligned} \quad \text{식 (2)}$$

변수의 정의

종속변수

DA =Kothari et al.에 따른 성과대응 재량적 발생액 ;

관심변수

TREAT =주기적 지정제 대상기업이면 1, 아니면 0 ;

POST =주기적 지정제 도입 이후 연도이면 1, 이전 연도이면 0 ;

$SURCHG = \text{감사보수인상률} = (\text{당기 감사보수} - \text{전기 감사보수}) / \text{전기 감사보수}$;

통제변수

BIG = 감사인이 BIG4 회계법인이면 1, 아니면 0 ;

SIZE = 기업규모(총자산(천원)의 자연로그 값) ;

DEBT = 부채비율(=총부채/총자산) ;

ROA = 총자산이익률(=당기순이익/총자산) ;

CFO = 영업현금흐름/총자산 ;

SGR = 매출액성장률(= (당기 매출액 - 전기 매출액) / 전기 매출액) ;

LSH = 최대주주지분율(특수관계자 지분을 포함) ;

FSH = 외국인투자자지분율 ;

MKT = 코스닥상장기업이면 1, 유가증권상장기업이면 0 ;

IND = 업종더미(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중분류기준).

식 (2)에서 종속변수인 $|DA|$ 는 재량적 발생액의 절대값이다. POST는 주기적 지정제 도입 이후 연도이면 1, 주기적 지정제 도입 이전 연도이면 0의 값을 가지는 더미변수이다. SHRG는 감사보수인상률로 당기 감사보수에서 전기 감사보수를 차감한 값을 전기 감사보수로 나누어 계산한다. POST는 주기적 지정제 도입 이후 연도이면 1, 주기적 지정제 도입 이전 연도이면 0의 값을 가지는 더미변수이다. TREAT는 회사가 주기적 지정대상기업이면 1, 통제기업이면 0의 값을 가지는 더미변수이다. δ_4 의 회귀계수 값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의 값을 가지면 감사보수인상이 감사품질을 개선하는 효과가 주기적 지정대상기업에서 더 크게 나타남을 의미한다. 통제변수는 식 (2)와 동일하다.

2. 표본구성

본 연구는 2019년 말 자산총액이 1,826억원 이상인 유가증권 및 코스닥시장 상장기업 중 비금융-12월 결산기업을 이용하여 분석을 수행한다. 2020년 주기적 지정대상기업이 전년도 말 자산총액 1,826억원 이상인 대규모 상장기업으로 제한되기 때문에 표본을 자산총액 1,826억원 이상의 상장기업으로 제한하였다. 연구기간은 주기적 지정제 도입 직전인 2019년과 도입 첫 해인 2020년, 2년간이다. 재무자료 및 감사인 정보는 TS2000에서 추출한다.

〈표 1〉 연도별 표본구성

연도	표본 수	비중
2019	769	50.00
2020	769	50.00
합계	1,538	100.00

표본기업 중 2020년에 감사인을 변경한 기업 숫자는 383개이며, 이 중 136개가 주기적 지정제로 인한 감사인 변경이고 247개가 주기적 지정제와 관계없이 감사인을 변경한 경우이다.

〈표 2〉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 적용대상기업 수

감사인 변경여부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 적용대상		Total
	No	Yes	
No	386	0	386
Yes	247	136	383
합계	633	136	769

3. 실증결과

가. 기술통계량 및 단일변량분석

<표 3>은 본 연구에서 사용한 주요 변수의 기술통계량을 요약한 결과이다.

〈표 3〉 주요 변수의 기술통계량

변수명	평균값	표준편차	최솟값	중간값	최댓값
DA	0.05	0.05	0.00	0.03	0.25
TREAT	0.18	0.38	0.00	0.00	1.00
POST	0.50	0.50	0.00	0.50	1.00
SURCHG	0.38	0.48	-0.51	0.26	2.68
BIG	0.51	0.50	0.00	1.00	1.00
SIZE	20.23	1.14	18.99	19.84	24.30
DEBT	0.39	0.21	0.02	0.40	0.88
ROA	0.02	0.07	-0.25	0.02	0.19
CFO	0.06	0.07	-0.11	0.05	0.27
SGR	0.03	0.27	-0.66	0.00	1.29
LSH	0.43	0.16	0.11	0.44	0.79
FSH	0.11	0.12	0.00	0.06	0.60
MKT	0.36	0.48	0.00	0.00	1.00

주 : 1) 변수의 정의는 식 (1), 식 (2) 참조

재량적 발생액의 절대값을 나타내는 |DA|의 평균값은 0.05이며, 중간값은 0.03으로 나타났다. 주기적 지정제 적용기업(TREAT)은 전체 표본의 18%를 차지하였다. 표본기업은 주기적 지정제 도입 직전인 2019년 대비 2020년에 평균적으로 감사보수를 38% 인상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전기 대비 감사보수 증가율을 나타내는 SURCHG의 최솟값은 -0.51, 최댓값은 2.68로 상당한 편차를 나타냈다. 표본기업 중 BIG4 회계법인으로부터 감사를 받는 비율(BIG)은 51%였고, 코스닥상장기업(MKT)이 36%를 차지하였다. ROA 평균은 0.02로 이는 표본기업의 당기순이익이 총자산의 약 2% 수준임을 의미한다. 총자산의 로그값을 나타내는 SIZE의 평균은 20.23으로 이를 원래의 값으로 환산하면 표본기업의 자산총액은 약 6,106억원이다. 표본기업은 평균적으로 부채비율(DEBT) 39%, 매출액성장률(SGR) 3%, 최대주주지분율(LSH) 43%, 외국인투자자지분율(FSH) 11%였다.

<표 4>는 본 연구에서 사용한 주요 변수의 상관관계표를 제시한다.

<표 4> 주요 변수 간 상관관계표

	DA	TREAT	POST	SURCHG	BIG	SIZE	DEBT	ROA	CFO	SGR	LSH	FSH
TREAT	-0.00 (0.93)											
POST	0.05 (0.06)	0.00 (1.00)										
SURCHG	-0.00 (0.91)	-0.06 (0.02)	0.13 (0.00)									
BIG	-0.04 (0.17)	0.27 (0.00)	-0.08 (0.00)	0.04 (0.15)								
SIZE	-0.05 (0.05)	0.19 (0.00)	0.01 (0.57)	0.05 (0.05)	0.45 (0.00)							
DEBT	0.11 (0.00)	-0.04 (0.12)	-0.01 (0.67)	0.02 (0.48)	-0.02 (0.41)	0.11 (0.00)						
ROA	0.08 (0.00)	0.01 (0.71)	-0.01 (0.58)	-0.03 (0.27)	0.08 (0.00)	0.06 (0.02)	-0.32 (0.00)					
CFO	0.29 (0.00)	0.02 (0.35)	0.07 (0.01)	0.03 (0.25)	0.02 (0.33)	0.05 (0.05)	-0.07 (0.00)	0.42 (0.00)				
SGR	0.02 (0.38)	-0.05 (0.04)	-0.09 (0.00)	-0.00 (1.00)	-0.02 (0.36)	-0.04 (0.15)	-0.04 (0.12)	0.17 (0.00)	0.09 (0.00)			
LSH	-0.09 (0.00)	-0.05 (0.07)	-0.00 (0.93)	0.02 (0.44)	0.06 (0.03)	-0.02 (0.53)	-0.06 (0.02)	0.09 (0.00)	0.04 (0.12)	0.01 (0.64)		
FSH	0.07 (0.01)	0.18 (0.00)	-0.05 (0.04)	0.01 (0.64)	0.29 (0.00)	0.45 (0.00)	-0.17 (0.00)	0.22 (0.00)	0.21 (0.00)	0.01 (0.59)	-0.23 (0.00)	
MKT	0.16 (0.00)	-0.13 (0.00)	0.00 (1.00)	-0.03 (0.29)	-0.24 (0.00)	-0.39 (0.00)	-0.05 (0.05)	0.01 (0.57)	0.06 (0.03)	0.10 (0.00)	-0.20 (0.00)	-0.10 (0.00)

주 : 1) 변수의 정의는 식 (1), 식 (2) 참조

2) () 안은 p값

|DA|는 POST와는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가지지만 TREAT와 SURCHG와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주기적 지정제 도입 이후 기간에 채량적 발생액이 증가하였으나, 주기적 지정제 대상기업과 그렇지 않은 기업의 채량적 발생액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고, 감사보수 증가율 역시 기업의 채량적 발생액에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 5>는 2020년 표본기업 중 주기적 지정제 대상기업과 그렇지 않은 기업의 주요 변수의 평균차이를 분석한 단일변량분석 결과이다. 분석결과 주기적 지정제 대상기업은 그 외 기업에 비하여 감사보수증가율(SURCHG)이 낮고, BIG4 감사인 선임비율(BIG)이 높고, 기업규모(SIZE)가 크고, 외국인투자자지분율(FSH)이 높으며, 유가증권시장에 소속된 비율(MKT)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5> 단일변량분석 : 주기적 지정제 대상기업과 그 외 기업 비교

변수명 ¹⁾	주기적 지정제 대상기업	그 외 기업	평균차이(t-test) ²⁾
DA	0.052	0.051	0.001
POST	1.000	1.000	-0.000
SURCHG	0.240	0.489	-0.248***
BIG	0.801	0.406	0.395***
SIZE	20.718	20.140	0.578***
DEBT	0.374	0.393	-0.019
ROA	0.019	0.019	0.000
CFO	0.064	0.061	0.003
SGR	-0.016	0.008	-0.024
LSH	0.421	0.438	-0.017
FSH	0.148	0.091	0.057***
MKT	0.228	0.392	-0.164***
표본개수	136	633	

주 : 1) 변수의 정의는 식 (1), 식 (2) 참조

2) *, **, ***는 각각 10%, 5%, 1% 수준에서 유의함

<표 6>은 2020년에 감사인을 변경한 기업 중 주기적 지정제 대상기업과 그렇지 않은 기업의 주요 변수의 평균차이를 분석한 단일변량분석 결과이다. 분석결과 주기적 지정제를 적용받아 감사인을 교체한 기업은 자율적으로 감사인을 교체한 기업에 비하여 감사보수증가율(SURCHG)이 높고, BIG4 감사인으로부터 감사를 받은 비율(BIG)이 높으며, 기업규모(SIZE)가 크고, 외국인투

자자지분율(FSH)이 높으며, 유가증권에 상장된 기업 비율(MKT)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6〉 단일변량분석 : 주기적 지정제 대상기업과 자율교체기업 비교

변수명	주기적 지정제 대상기업	자율교체기업	평균차이(t-test)
DA	0.052	0.053	-.002
POST	1.000	1.000	-.000
SURCHG	0.240	0.185	0.055**
BIG	0.801	0.632	0.170***
SIZE	20.718	20.331	0.387***
DEBT	0.374	0.404	-0.030
ROA	0.019	0.021	-0.002
CFO	0.064	0.062	0.002
SGR	-0.016	0.015	-0.031
LSH	0.421	0.434	-0.014
FSH	0.148	0.108	0.040***
MKT	0.228	0.364	-0.136***
표본개수	136	247	

주 : 1) 변수의 정의는 식 (1), 식 (2) 참조

2) *, **, ***는 각각 10%, 5%, 1% 수준에서 유의함

나. 다중회귀분석결과

(1) 가설 1에 대한 검증결과

<표 7>은 가설 1에 대한 검증결과로 주기적 감사인 지정이 감사품질에 미치는 영향을 보여준다. 모형 1은 전체 표본을 대상으로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이고, 모형 2는 감사인 변경이 있는 기업만을 대상으로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이다. 모형 1에서 TREAT, POST, TREAT*POST의 회귀계수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TREAT의 회귀계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다는 것은 주기적 지정제 대상기업과 그 외 기업의 채량적 발생액에 유의한 차이가 없음을 의미한다. POST의 회귀계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다는 것은 주기적 지정제 시행 전후 기간의 기업의 채량적 발생액에 유의한 차이가 없음을 의미한다. TREAT*POST의 회귀계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다는 것은 주기적 지정제 대상기업이 주기적 지정제 시행 이전 기간에 비하여 이후 기간에 채량적 발생액에 유의한 변동이 없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주기적 지정제가 감사품질 개선에 유의한 효과가 없었음을 시사한다.

〈표 7〉 주기적 감사인 지정이 감사품질에 미치는 영향

	모형 1	모형 2
TREAT	0.001 (0.256)	0.005 (1.078)
POST	0.003 (1.022)	0.009** (2.429)
TREAT*POST	0.002 (0.353)	-0.005 (-0.715)
BIG	-0.002 (-0.611)	0.005 (1.201)
SIZE	-0.004*** (-2.924)	-0.007*** (-3.945)
DEBT	0.039*** (6.029)	0.036*** (3.803)
ROA	-0.008 (-0.369)	0.003 (0.090)
CFO	0.219*** (11.143)	0.215*** (7.901)
SGR	-0.003 (-0.592)	-0.010* (-1.709)
LSH	-0.008 (-0.980)	-0.022* (-1.869)
FSH	0.024* (1.946)	0.033** (2.265)
MKT	0.009*** (3.251)	0.013*** (2.945)
상수항	0.098*** (3.604)	0.142*** (4.186)
업종더미	포함	포함
N	1538.000	766.000
Adj. R ²	0.160	0.188
F값	7.629***	5.031***

주 : 1) 변수의 정의는 식 (1), 식 (2) 참조

2) *, **, ***는 각각 10%, 5%, 1% 수준에서 유의함

다음으로 모형 2는 초도감사기업을 대상으로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이다. TREAT와 TREAT*POST의 회귀계수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고, POST는 5% 수준에서 유의한 양(+)의 값을 나타냈다. TREAT의 회귀계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다는 것은 주기적 지정제 대상기업이 주기적 지정제 이외의 사유로 감사인을 변경한 기업과 재량적 발생액에 유의한 차이가 없음을 의미한다. POST의 회귀계수는 유의한 양(+)의 값을 가지나 TREAT*POST의 회귀계수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다는 것은 주기적 지정제 도입 후 재량적 발생액이 그 이전 기간에 비하여 유의하게 증가하였으나, 이러한 관계가 주기적 지정제 적용기업이나 아니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의미한다. 결론적으로 <표 7>의 실증결과는 주기적 지정제가 감사품질 개선에 유의한 효과가 없었음을 시사한다.

기타 통제변수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SIZE의 회귀계수는 유의한 음(-)의 값을 가지는 반면 DEBT, CFO, FSH, MKT의 회귀계수는 유의한 양(+)의 값을 나타냈다. 이는 기업규모가 클수록 재량적 발생액이 적은 반면 부채비율이 높고, 영업현금흐름이 크고, 외국인투자자비율이 높으며,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기업이 재량적 발생액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모형의 설명력을 나타내는 Adj. R²는 각각 0.160과 0.188로 나타났다.

(2) 가설 2에 대한 검증결과

<표 8>은 가설 2에 대한 검증결과로 주기적 감사인 지정으로 인한 감사보수의 증가가 감사품질에 미치는 영향을 보여준다. 모형 1은 전체 표본을 대상으로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이고, 모형 2는 감사인 변경기업만을 대상으로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이다. 모형 1에서 SURCHG, TREAT*SURCHG, POST*SURCHG, TREAT*POST*SURCHG의 회귀계수가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SURCHG의 회귀계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다는 것은 감사보수증가율이 재량적 발생액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의미한다. TREAT*SURCHG의 회귀계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다는 것은 감사보수증가율이 재량적 발생액에 미치는 영향이 주기적 지정제 대상기업과 아닌 기업 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음을 의미한다. POST*SURCHG의 회귀계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다는 것은 감사보수증가율이 재량적 발생액에 미치는 영향이 주기적 지정제 시행 전과 시행 후 기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음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TREAT*POST*SURCHG의 회귀계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다는 것은 주기적 지정제 시행 전후 감사보수증가율이 재량적 발생액에 미치는 영향이 주기적 지정제 대상기업과 아닌 기업 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음을 시사한다. 모형 2의 회귀분석결과는 모형 1과 동일하였다.

〈표 8〉 주기적 감사인 지정으로 인한 감사보수의 증가가 감사품질에 미치는 영향

	모형 1	모형 2
SURCHG	-0.001 (-0.139)	0.003 (0.514)
POST	0.004 (1.515)	0.008 [*] (1.793)
TREAT*POST	-0.005 (-0.546)	-0.008 (-0.892)
TREAT*SURCHG	0.005 (0.446)	0.005 (0.442)
POST*SURCHG	-0.004 (-1.273)	0.007 (0.630)
TREAT*POST*SURCHG	0.027 (1.394)	0.015 (0.690)
BIG	-0.002 (-0.769)	0.004 (1.009)
SIZE	-0.004 ^{***} (-2.970)	-0.007 ^{***} (-3.899)
DEBT	0.038 ^{***} (6.032)	0.035 ^{***} (3.724)
ROA	-0.008 (-0.385)	0.002 (0.079)
CFO	0.219 ^{***} (11.135)	0.214 ^{***} (7.836)
SGR	-0.002 (-0.551)	-0.010 [*] (-1.672)
LSH	-0.009 (-1.071)	-0.023 ^{**} (-1.966)
FSH	0.024 ^{**} (2.009)	0.033 ^{**} (2.232)
MKT	0.009 ^{**} (3.232)	0.013 ^{***} (2.915)
상수항	0.100 ^{***} (3.674)	0.142 ^{***} (4.194)
업종더미	포함	포함
N	1538.000	766.000
Adj. R ²	0.161	0.189
F값	7.257 ^{***}	4.789 ^{***}

주 : 1) 변수의 정의는 식 (1), 식 (2) 참조

2) *, **, ***는 각각 10%, 5%, 1% 수준에서 유의함

다. 추가분석

(1) 주기적 지정제가 감사보수에 미친 영향

<표 9>는 주기적 지정제가 감사보수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 결과이다. 모형 1은 전체 표본을 대상으로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이고, 모형 2는 감사인 변경이 있는 기업만을 대상으로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이다. 모형 1에서 TREAT의 회귀계수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이는 주기적 지정제 대상기업의 감사보수와 아닌 기업의 감사보수에 유의한 차이가 존재하지 않음을 의미한다. POST의 회귀계수는 0.333으로 1% 수준에서 유의한 양(+)의 값을 나타냈다. 이는 주기적 지정제 시행 이전에 비하여 이후 기간에 감사보수가 유의하게 증가하였음을 의미한다. TREAT*POST의 회귀계수는 -0.164로 1% 수준에서 유의한 음(-)의 값을 나타냈다. 이는 주기적 지정제 시행 이후 감사보수가 유의하게 증가하였으나, 주기적 지정제 적용기업이 아닌 기업에 비하여 감사보수가 적게 올랐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음으로 모형 2의 실증결과는 살펴보면 TREAT의 회귀계수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이는 주기적 지정제로 감사인이 변경된 기업과 그 외의 사유로 감사인이 변경된 기업의 감사보수에 유의한 차이가 존재하지 않음을 의미한다. POST의 회귀계수는 0.118로 1% 수준에서 유의한 양(+)의 값을 나타냈다. 이는 주기적 지정제 시행 이전에 비하여 이후 기간에 초도감사기업의 감사보수가 유의하게 증가하였음을 의미한다. 모형 2는 모형 1과 달리 TREAT*POST의 회귀계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이는 주기적 지정제 시행 이후 초도감사기업의 감사보수가 유의하게 증가하였으나, 주기적 지정제로 감사인이 변경된 기업과 주기적 지정제 외의 이유로 감사인이 변경된 기업 간에 감사보수의 차이는 유의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 9> 주기적 감사인 지정이 감사보수에 미친 영향

	모형 1	모형 2
TREAT	-0.006 (-0.161)	-0.047 (-1.457)
POST	0.333*** (15.870)	0.118*** (4.549)
TREAT*POST	-0.164*** (-3.316)	0.054 (1.259)
SIZE _{it-1}	0.483*** (37.424)	0.467*** (33.521)
INVREC _{it-1}	0.133 (1.594)	0.300*** (3.109)
EXP _{it-1}	-0.009 (-0.182)	-0.026 (-0.424)

〈표 9〉 주기적 감사인 지정이 감사보수에 미친 영향 (계속)

	모형 1	모형 2
CON _{it-1}	0.100*** (8.956)	0.115*** (8.910)
ROA _{it-1}	0.056 (0.258)	0.020 (0.078)
OPN _{it-1}	-0.115*** (-3.034)	-0.100 (-0.931)
ISS _{it-1}	0.125 (0.761)	-0.034 (-0.176)
LSH _{it}	-0.150** (-2.111)	-0.201** (-2.419)
FSH _{it}	0.152 (1.482)	0.224** (2.245)
DEBT _{it-1}	0.408*** (6.878)	0.368*** (5.160)
LOSS _{it-1}	0.107*** (3.444)	0.070* (1.899)
BIG _{it}	0.349** (14.649)	0.515** (18.106)
MKT _{it}	-0.023 (-0.945)	0.002 (0.055)
상수항	1.949*** (7.605)	2.122*** (7.148)
업종더미	포함	포함
N	1538.000	766.000
Adj. R ²	0.807	0.901
F값	134.682***	146.377***

주 : 1) 변수의 정의

INVREC=(재고자산+매출채권)/총자산; SIZE=ln(총자산); EXP=수출/총매출; CON=ln(종속기업 개수); ROA=당기순이익/총자산; OPN=감사의견이 적정이면 0, 아니면 1; ISS=(유상증자가액+사채발행금액)/총자산; LSH=대주주지분율; FSH=외국인투자자지분율; DEBT=총부채/총자산; LOSS=당기순손실이면 1, 아니면 0; BIG=BIG4회계법인이 감사하였으면 1, 아니면 0; MKT=코스닥상장기업이면 1, 아니면 0.

2) *, **, ***는 각각 10%, 5%, 1% 수준에서 유의함

(2) 소수의 순위등급변수(fractional ranks variable)로 측정한 감사보수증가율을 이용한 분석

본 연구는 이상치(outlier)로 인한 실증결과의 왜곡을 방지하기 위하여 연속변수의 경우 분포의 상·하위 1%를 초과하는 값을 상·하위 1% 값으로 대체하는 윈저라이징을 실시하였다. 그러나 <표 3> 기술통계량을 살펴보면 이러한 윈저라이징에도 불구하고, 감사보수증가율(SURCHG)이 비율변수의 특성상 상당한 편차를 나타냈다. <표 10>은 감사보수증가율을 0에서 1 사이의 값을 가지는 소수의 순위등급변수로 변환하여 이상치로 인한 효과를 완전히 제거한 후, 가설 2를 재검증한 결과이다. 분석결과 감사보수증가율을 소수의 순위등급변수로 변환하더라도 회귀분석 결과에 질적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0> 소수의 순위등급변수로 측정한 감사보수증가율을 이용한 분석

	모형 1	모형 2
SURCHG_m	-0.006 (-0.682)	-0.001 (-0.115)
POST	0.006 (1.592)	0.006 (1.069)
TREAT*POST	-0.004 (-0.298)	-0.004 (-0.315)
TREAT*SURCHG_m	0.013 (0.908)	0.011 (0.802)
POST*SURCHG_m	-0.007 (-1.235)	0.008 (0.657)
TREAT*POST*SURCHG_m	0.017 (0.771)	0.002 (0.085)
상수항	0.099** (3.643)	0.142*** (4.180)
통제변수	포함	포함
업종더미	포함	포함
N	1538.000	766.000
Adj.R ²	0.160	0.188
F값	7.237***	4.765***

주 : 1) 변수의 정의

SURCHG_m=소수의 순위등급변수로 측정한 감사보수인상률(=(당기 감사보수-전기 감사보수)/전기 감사보수)

기타 변수의 정의는 식 (1)과 (2) 참조

2) *, **, ***는 각각 10%, 5%, 1% 수준에서 유의함

V. 결 론

본 연구는 2020년도 상장법인 감사에 처음 적용된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의 정책효과를 검증한 연구이다. 감사인 지정은 직권지정과 주기적 지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선행연구 결과는 감사인 직권 지정이 감사품질 제고에 상당한 효과가 있음을 보여주며, 이는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 도입의 이론적 근거가 되었다. 그러나 직권지정에 관한 기존 선행연구 결과는 회계부정 가능성이 높은 기업에 감사인을 직권 지정했을 때 나타난 효과로 회계부정 가능성이 낮은 기업에 감사인을 지정했을 때에도 동일하게 감사품질 제고효과가 유지될 것인지는 실증적으로 검증이 필요한 문제이다. 본 연구의 실증결과는 회계부정 가능성이 낮은 기업에게까지 감사인을 주기적으로 지정하는 것은 사회적으로 불필요한 비용 증가만 초래할 것이라는 기업들의 주장을 어느 정도 뒷받침하는 실증적 증거를 제시함으로써 주기적 지정제의 제도개선 논의에 단초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본 연구는 회계개혁의 여파로 급증한 기업의 감사보수가 감사품질 개선에 실질적 효과가 있었는지 여부에 관해 중요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최근 표준 감사시간제도 및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외부감사 전환 등으로 기업의 감사보수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 역시 감사보수 인상의 주요한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고 있다. 본 연구의 가설 2의 검증 모형은 최근 2년간 50% 이상 급증한 기업의 감사비용이 감사품질에 미치는 평균적 효과를 살펴볼 수 있을 뿐 아니라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 도입으로 인한 효과를 구분하여 검증할 수 있다는 점에서 회계개혁의 사회적 효익과 비용에 관한 추후 논의에 중요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는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 도입 직후, 감사품질의 개선효과를 살펴보았다. 그러나 도입 이후 경과된 시간이 짧아 주기적 지정제 도입의 효과를 장기적 관점에서 살펴보기 못했다는 한계점이 있다. 향후 연구는 지정받은 신임 감사인이 전임 감사인에 비하여 동종 산업 내 순위가 높거나 낮을 때 주기적 지정제 도입의 효과가 달라지는지에 관해 보다 심도 있는 연구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⁶⁾

6) 본 연구에서 표본으로 사용한, 주기적 지정제로 감사인이 변경된 136개 기업 중 신임 감사인이 전임 감사인에 비하여 업계 내 순위가 상승한 기업은 47개, 신임 감사인이 전임 감사인에 비하여 업계 내 순위가 하락한 기업은 38개, 51개 기업은 신임 감사인과 전임 감사인의 업계 내 순위가 차이가 없었다. 신임 감사인과 전임 감사인의 업계 내 순위 차이가 주기적 지정제 도입효과에 영향을 미치는지 실증분석을 실시한 결과 감사인 교체 유형이 주기적 지정제 도입효과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은 이유가 불충분한 표본 수 때문일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해서는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참고문헌

- 강선민 · 황인태. 2007. “감사인 지정과 재량적발생액의 변화 : 기업과 감사인의 역할”. 회계학연구 제32권 제4호 : 115-150.
- 권수영 · 노준화 · 배길수. 2004. “감사인 지정이 감사인의 독립성을 제고하는가? 감사인 순환과 감사인 유지를 중심으로”. 회계학연구 제29권 제4호 : 191-218.
- 권수영 · 임영덕 · 마희영. 2008. “감사인의 산업전문성이 계속감사기간과 감사품질의 관계에 미치는 영향과 강제교체 감사인의 감사보수 분석”. 회계저널 제17권 제2호 : 1-38.
- 김선미 · 유승원. 2010. “감사품질과 감사인 강제교체 및 자율교체”. 회계 · 세무와 감사 연구 제51권 : 227-256.
- 김현정 · 유승원. 2022. “주기적 감사인 지정 가능성이 재무제표의 보수성에 미치는 영향”. 회계 · 세무와 감사 연구 제64권 제3호 : 65-94.
- 노준화 · 배길수 · 전영순. 2003. “지정감사인이 더 높은 감사보수를 받는가?”. 회계학연구 제28권 제4호 : 177-202.
- 노준화. 2009. “감사인 강제교체가 감사품질에 미치는 영향”. 회계학연구 제34권 제4호 : 1-29.
- 박재환 · 박희우 · 정태범. 2008. “감사인 강제교체제도가 감사보수에 미치는 영향”. 회계저널 제17권 제1호 : 137-160.
- 박종일 · 전규안. 2018. “비정상 감사보수 및 감사시간과 감사품질 간의 관계 재분석”. 세무와 회계저널 제19권 제5호 : 9-53.
- 박한순. 1996. “감사인 지정이 경영자의 이익조절행위에 미치는 영향”. 회계학연구 제21권 제3호 : 33-61.
- 손혁 · 조호철 · 정재경. 2022. “주기적 지정제는 감사품을 제고하는가?”. 회계 · 세무와 감사 연구 제64권 제1호 : 217-246.
- 송인만 · 박연희. 2005. “감사인 지정의 효과 : 부채비율과 다와 소유경영미분리의 사유를 중심으로”. 회계 · 세무와 감사 연구 제41권 : 197-217.
- 신근식 · 조형진 · 최종학. 2014. “감사인 교체와 감사인의 보수적 회계감사”. 회계 · 세무와 감사 연구 제56권 제1호 : 179-211.
- 신용인 · 최관 · 조현우. 2007. “초도감사 보수할인이 감사품질에 미치는 영향”. 회계학연구 제32권 제1호 : 173-207.
- 안영균 · 이재경. 2004. “감사인 지정이 기업의 이익조정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회계학연구 제29권 제1호 : 89-115.
- 임영덕. 2006. “계속 감사기간과 감사품질에 관한 연구”. 회계학연구 제31권 제3호 : 183-213.
- 정도진 · 김종현 · 장석진. 2018. “동일 감사인 6년 강제교체제도는 실패한 제도인가?”. 회계 · 세무와 감사 연구 제61권 제1호 : 97-125.
- 최 관 · 박종일. 2012. “계속감사기간과 감사품질에 관한 연구”. 세무와 회계저널 제13권 제3

호 : 315–356.

- 최아름 · 선우혜정 · 최종학. 2014. “감사법인 강제교체제도 도입을 둘러싼 논란 : 현황과약 및 선행연구의 발견에 대한 문헌검토와 정책제언”. 회계저널 제23권 제6호 : 37–87.
- 최종학 · 안성희 · 황문호. 2016. “초도감사보수 할인이 감사품질에 미치는 영향 : 감사인 강제교체기업과 자율교체기업의 차이”. 회계학연구 제41권 제2호 : 131–165.
- Choi, J., Kim, J., and Y. Zang. 2010. Do abnormally high audit fees impair audit quality? *Auditing : A Journal of Practice and Theory* 29(2) : 115–140.
- Davis, L. R., Soo, B. S., and G. M. Trompeter. 2009. Auditor tenure and the ability to meet or beat earnings forecasts. *Contemporary Accounting Research* 26(2) : 517–548.
- DeAngelo, L. E. 1981. Auditor size and audit quality. *Journal of Accounting & Economics* 3 (3) : 183–199.
- Francis, J. R., Michas, P. N., and M. D. Yu. 2013. Office size of big 4 auditors and client restatements. *Contemporary Accounting Research* 30(4) : 1626–1661.
- Gaver, J. J., and S. Utke. 2019. Audit quality and specialist tenure. *The Accounting Review* 94(3) : 113–147.
- Johnson, E., Khurana, I. K., and J. K. Reynolds. 2002. Audit Firm tenure and the quality of financial reports. *Contemporary Accounting Research* 19(4) : 637–660.
- Kim, J., and C. H. Yi. 2009. Does auditor designation by the regulatory authority improve audit quality? evidence from korea. *Journal of Accounting and Public Policy* 28(3) : 207–230.
- McGuire, S. T., Omer, T. C., and N. Y. Sharp. 2012. The impact of religion on financial reporting irregularities. *The Accounting Review* 87(2) : 645–673.
- Myers, J. N., Myers, L. A., and T. C. Omer. 2003. Exploring the term of the auditor–client relationship and the quality of earnings : A case for mandatory auditor rotation? *The Accounting Review* 78(3) : 779–799.

Does the Increase in Audit Fees due to the Periodic Auditor Designation by the Regulatory Authority Improve Audit Quality?*

Kwang Sook Lee** · Eun Sun Ki***

〈Abstract〉

I examine the effect of the increase in audit fees due to the introduction of the periodic auditor designation system on audit quality, using 2019 and 2020 financial statements data and audit fee data of listed companies with total assets of 182.6 billion won or more at the end of 2019.

The first hypothesis is about the effect of the periodic auditor designation system on audit quality. Under the periodic auditor designation system, companies are not free to appoint auditors, so it is unlikely that audit fees will be discounted due to competition to attract new clients. If the auditor receives an appropriate compensation for the input time without a discount, he/she will spend more time understanding the new client, thereby preventing the deterioration of the audit quality during the initial audit. However, since the companies subject to the periodic designation system in 2020 are large listed companies, it can be difficult for auditors to fully understand the complex business structure of new clients, even if they input the most of their available time during the busy season.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empirically examine the effect of the introduction of the periodic auditor designation system on the audit quality. In this study, we measure audit quality by the absolute value of discretionary accruals.

The second hypothesis directly investigates the effect of increased audit fees on audit quality after the periodic auditor designation system. When an auditor is assigned, it is common for audit fees to increase because there is no competition to attract new clients. Prior studies focused on whether the initial audit fee discount under the free audit engagement system affects audit quality. There has never been a study directly examining whether an increase in audit fee due to the designation of an auditor leads to the improvement of audit quality. If such an increase in audit fee simply compensates for the audit cost incurred by the auditor to understand new clients and

* This work was supported by the Ministry of Educa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NRF-2021S1A5A8071149)

** Associate Professor, Business School, Tech University of Korea, kslbest@tukorea.ac.kr, First Author

*** Associate Professor, Department of Business Administration and Accounting, Kangwon National University, eski@kangwon.ac.kr, Corresponding Author

does not contribute to the improvement of audit quality, the social cost of the periodic auditor designation system can be seen as greater than the benefit. I examine whether there is a difference between the periodic auditor designation company and the matched company in the effect of the audit fee increase on the audit quality.

Main empirical results are as follows. I find that the periodic auditor designation system do not have a significant effect on the audit quality. In addition, after the introduction of the periodic auditor designation system, audit fees were significantly increased not only for companies that subject to the periodic auditor designation system but also for other companies, but the audit fee increase rate does not have a significant effect on the audit quality. These results show that although the periodic auditor designation system had the effect of realizing the audit fee, which was insufficient compared to the audit efforts, this did not lead to the improvement of the audit quality.

<Key words> audit quality, audit fees, periodic auditor designation